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비공식 번역)

[인도 관보 제2부 제3조 제(i)항에 게재 예정]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

공 고

뉴델리, 2020년 8월 20일

관세청 공고 81/2020 (비관세)

G.S.R 521 (E).-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 제28DA조와 더불어 제156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에 중앙정부는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1.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 (1) 이 규칙의 명칭은 2020년 관세법 규칙(무역협정하의 원산지규정의 집행)으로 한다.
- (2) 이 규칙은 2020년 9월의 21번째 날에 발효한다.
- (3) 이 규칙은 수입자가 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인도로의 물품 수입에 적용된다.

2. 정의.

- (1) 본 규칙에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
 - (가) “법”이란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을 의미한다.
 - (나) “특혜관세율”이란 무역협정에 의거해 부과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 (다) “특혜관세대우”란 무역협정에 의거해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원산지 규정”이란 1975년 관세율법(1975년 법률 제51호) 제5조 제(1)항의 무역협정을 위해 고지된 규칙을 의미한다.
- (마) “관세율표”란 무역협정에 의거한 특혜관세율을 명시한 법 제25조 제(1)항하에 발표된 공고를 의미한다.
- (바) “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또는 그 안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각 원산지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 “검증 기관”이란 무역협약 하의 검증 요청에 답변하도록 지정된 수출당사국 또는 원산지의 기관을 의미한다.

3. 특혜관세 신청.

- (1)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을 해야 한다.
 - (가) 수입신고서에 물품이 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신고한다.
 - (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한다.
 - (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을 포함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 (라)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원산지증명서 세부사항을 기입한다.
 - (i) 원산지증명서 참조 번호
 - (ii)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 (iii) 원산지결정기준

(iv) 누적기준 적용 시 표시

(v) 제3국에서 원산지증명서(연결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을 시 표시, 그리고

(vi) 물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운송되었을 경우 표시

(2) 이 규칙에 포함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검증 없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이 배제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불완전하고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서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 발급된 경우, 또는

(라) 원산지증명서가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항목에 대해 발급된 경우

상기 모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된다.

설명: 제2항 제(라)호는 물품이 해당하는 관세율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수입자가 소지해야하는 원산지 관련 정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가) Form I에 표시된 대로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식을 입증하는 정보를 소지하고,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나) Form I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수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간 보관하고 그를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 상기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5. 수입자로부터의 자료 요청.

(1) 통관 절차 도중 또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신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4조에 의거해 정보와 증빙 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 정보 또는 문서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수령한 정보와 문서를 기반으로 담당공무원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수락하고 상기 정보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고지한다.

(4) 수입자가 요청받은 정보와 문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했거나 각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문서가 불충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6조에 의거해 본 목적상 임명된 담당 공무원에게 검증 제안서를 전송한다.

(5) 본 규칙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기록될 사유로 인해 추가 검증 없이 특혜관세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가) 수입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가 제공한 또는 기록상의 정보와 문서가 물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6. 검증 요청.

- (1)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관 절차 도중 또는 그 후에 검증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무역협정 상의 직인 및 서명 견본과 비교했을 때 서명 또는 직인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또는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 (나) 원산지증명서상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거나 수입국에 의한 특혜관세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 (다) 신청된 대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사 차원에서 무작위로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단,
- 제(나)호에 의한 검증 요청은 수입자가 제5조의 요청받은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검증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요청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자료를 검증당국에 요청한다.
- (2) 제(1)항의 수령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특정적이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신청한 특혜관세가 해당하는 특정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검증당국에 현장검증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3) 검증 요청이 본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경우, 검증요청을 보낼 시 검증 기관에 다음의 답변 제출 시한을 고지해야 한다.

(가) 해당 무역협정에 규정된 시한

(나) 협정에 그러한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요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60일.

(4) 제1항 제(가)호 또는 제(나)호의 검증이 수입품 통관 절차 도중 실시되는 경우,

(가) 그러한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는 검증 종결 시까지 유예된다.

(나) 검증당국은 검증 요청 시 특혜관세대우 유예의 사유를 고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 제18조 하에 잠정 부과된 관세와 신청된 특혜관세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수입자에 대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 부과하거나 통관할 수 있다.

(5) 본 규칙 하의 모든 검증 요청은 관세·간접세 위원회가 지정한 담당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6) 본 규칙에서 요청된 정보가 정해진 시한 내에 수령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 수령일로부터 45일 내에 또는 관세청장 혹은 관세차장이 허가한 대로 연장된 기간 안에 검증을 종결한다. 단, 검증 완결 시한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시한 내에 검증을 완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7)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검증 없이 특혜관세 신청을 배제할 수 있다.

(가) 검증 기관이 정해진 시한 내에 검증 요청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나) 검증 기관이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본 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검증 기관이 제공한 또는 기록상의 정보 및 문서가 물품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7. 동일한 물품.

- (1)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물품이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그러한 결정 이전 혹은 이후에 제출된 특혜관세 신청을 추가 검증 없이 배제할 수 있다.
- (2) 제1항하에 동일 물품에 대한 신청이 배제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 (가)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립된 사례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배제 사유를 수입자에게 고지한다. 그리고,
 - (나) 제조 또는 기타 원산지와 관련된 조건이 무역협약 하의 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변경되었음이 수령한 정보 및 문서를 기반으로 입증된 경우 향후 효력을 발휘하는 동일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재개한다.

8. 기타.

- (1) 수입자가 5번 규칙 하에 정해진 기한까지 요청받은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본 규칙 하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이 확립된 경우, 본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 무역협정의 부정한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본 규칙과 법에 의거해 취해지도록 요구되는 모든 기타 행동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당 수입자에 의해 특혜관세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모든 수입신고서에 대한 부과를 검증한다. 강제 부과 검증제도는 기록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관리를 통해 수입자가 본 법 제28DA조 하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면 중단된다.

- (2) 수입자가 무역협정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판매자 또는 그 외 어느 사람과라도 담합을 한 것이 확립되는 경우, 수입자의 특혜관세 신청은 불허되며 법 또는 당시에 유효한 모든 법 하에 처벌 행위를 받을 법적 책임이 있다.
- (3) 본 규칙의 조항과 원산지 규정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규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 (4) 중앙정부는 관보 공고를 통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규칙의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

Form I

(본 규칙 제4조 참조)

제1조

(서식 작성 요령)

1. 1962년 관세법 제28DA조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및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하도록 요구된다.
2. 상기 목적상, 본 서식은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3. 법 제28DA조는 제공된 정보와 특혜관세 신청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추가 정보 또한 획득될 수 있다.

4. 필요시 전반적 안내를 위해 서식에 사용된 전문 용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무역협정은 각각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 나열된 각 용어의 구체적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1975년 관세율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해 고지된 대로 각 원산지 규정 또한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i.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WO):** 어떤 비원산지 재료도 결합되지 않고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ii. 예를 들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물품 등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쳐야 한다.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에 지정된 기준에 따라 이하의 방법을 조합하여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여 충족될 수 있다.

(가) 세번변경기준(CTC)

(나) 역내 또는 국내가치비율(RVC/DVC), 그리고

(다) 공정 기준

iii. **가치비율기준:** 이 규칙에 의하면 물품이 역내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치 중 일정한 최소한의 백분율이 한 국가에서 유래해야 한다. 가치 요소와 그러한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공식은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iv. **세번변경기준(CTC):** 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최종 물품과 HS 세번이 같아서는 안 된다(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류 단위, 호 단위, 소호 단위가 될 수 있다). 무역협정의 요건에 따라, 물품은 류 단위(CC), 호 단위(CTH), 소호 단위

(CTSH) 변경을 거쳐야 FTA 특혜대우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최종 물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세번을 알아야 한다.

v. **공정 기준:** 이 규칙에 의하면 역내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물품은 원산지에서 특정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

vi.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많은 무역협정이 비원산지를 사용해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 단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세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가지고 있다. 물품의 세번에 따라, 원산지 신청에 어떤 기준이 사용되어왔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vii. **최소허용수준:** 이 조항은 해당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며, 이 때 그러한 재료의 총량이 물품의 가치 또는 무게에서 일정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조항은 협정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그 백분율 또한 협정마다 다르다.

viii. **누적:** “누적”이라는 개념은 특혜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생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련 원산지 규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무역협정 참여국 생산자는 해당 원산지 규정의 목적상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누적 또는 누적원산지규정은 한 참여국의 상품이 해당 협정의 다른 참여국에서 상품이 추가 가공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누적이 성격과 범위는 협정에 규정되며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누적은 양자누적, 지역누적, 유사누적 등일 수 있다.

ix. **간접재료/중립재**란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조사에 사용되었으나 물리적으로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은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보수 또는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연료, 공장, 장비, 상품의 최종

구성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 등이 있다. 무역 협정에 따라 이 요소는 역내산 또는 역외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 x. **소매용 포장과 포장재료의 취급에 관한 규칙:** 그러한 규정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치비율 또는 세번변경기준을 계산할 때 그러한 재료가 어떻게 취급되어야할지를 규정한다.
- xi. **직접 운송:** 대부분의 협정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무역협정에 특정한 완화 규정이 규정될 수 있다.

제2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제출)

(가) 수입자 이름

(나) 수입신고서 번호 및 일자

(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세관

(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물품

일련번호	품목명	세번(여덟 자리)

제3조

(본 정보는 물품 수입 전에 소지하여야 함)

제1부:

- 수입된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생산 공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청하는지 기재하십시오. 예를 들어 WO, RVC + CTH/CTSH 또는 CTH 혹은 CTSH 또는 RVC 등이

있습니다.

[WO: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RVC: 역내가치비율, CTH: 4단위 변경기준, CTSH: 6단위 변경기준, CC: 2단위 변경기준]

주1: 물품을 “완전 생산품”으로 신청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지 명시하십시오. 무역협정마다 특정 규정에 그러한 절차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협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텃사냥에 의하거나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행하여진 어로 또는 양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선행하는 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주2: 물품이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제조/가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품목명	생산 공정	원산지결정기준
1.		
2.		

제2부: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경우, 각 수입품마다 별지에 작성)

1. 본 요청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재료/원자재

별로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원산지 재료/원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역내산 재료/원자재 품목명	최종물품 생산자 제조 여부	역내 제3자 생산자 생산 여부	제3자로부터 조달된 경우 최종물품 생산자의 규칙 준수 여부 및 해당 원자재의 원산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			
2.			

수입품 품명과 세번(여덟 자리):

주: 최종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자재는 그 원산지가 확인될 수 없을 경우 역외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가.	요청 대상 물품이 역내산인지 결정하는 데 최소허용수준 조항이 사용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러한 재료와 그 백분율 또는 양을 기술하십시오.
나.	요청 대상 물품이 역내산인지 결정하는 데 누적 조항이 적용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 누적 방식과 범위를 기술하십시오.
다.	물품이 역내산인지 확인하는데 간접재료/중립재, 포장재료 등 기타 추가적 기준이 사용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사용된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해당하는 재료를 기술하십시오:
라.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치비율을 기반으로 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다음을 기재하십시오.

		(1) 역내가치비율(%): (2)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 (예: 재료, 수익, 노동, 간접비 등)
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세 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물품 생산에 사용 된 역외산 재료/원자재의 HS 코드 를 기재하십시오:
바.	요청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결 정하는 데 공정 기준이 적용되 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적용된 기준을 기 재하십시오:
사.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되었 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 시오:
아.	해당 탁송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운송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아니오’로 답한 경우, 해당 물품이 해당 협약의 조항에 부합함이 확인 되었는가? 물품이 규정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 족했음이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F. No. 15021/18/2020(국제관세과)]

(Ananth Rathakrishnan)

Deputy Secretary of the Government of India